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463
----------	-------

발의연월일 : 2026. 8. 5.

발 의 자 : 곽규택 · 이현승 · 정성국
박수영 · 나경원 · 윤영석
박준태 · 조배숙 · 주진우
최수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국가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양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 · 연구기관 · 기업 등이 집적된 지역을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대하여 일정 기간 경감해주고,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이연 등의 과세 특례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1조의36 및 제121조의37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규택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62호)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의12(제121조의36 및 제121조의37)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12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121조의36(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및 해양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이하 이 장에서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라 한다)에 2031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해양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사업개시일 이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30

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2. 해당 과세연도의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times$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③ 제1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2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④ 제2항제2호를 적용받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의2제8항의 이자상당가산액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 제2항제2호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121조의37(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수도권에서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내국인이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종전사업용부동산”이라 한다)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종전사업용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을 수 있다.

1. 법인: 양도차익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금액은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에 있는 사업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신규사업용부동산”이라 한다)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거주자: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로 보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신규사업용부동산 처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이 적용되는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로의 이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신규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규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③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 또는 납부할 세액에 관하여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1. 신규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2. 제2항에 따라 사업용 부동산을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로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이전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의 계산 및 그 산입방법, 사업 폐지 등에 관한 판단기준,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7조제4항 본문 중 “제121조의22제2항 및 제121조의33제2항”을 “제121조의22제2항, 제121조의33제2항 및 제121조의36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21조의33제2항”을 “제121조의33제2항, 제121조의36제1항”으로 한다.

제128조제2항 중 “제121조의33제2항”을 “제121조의33제2항, 제121조의36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21조의33제2항”을 “제121조의33제2항, 제121조의36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21조의33제2항”을 “제121조의33제2항, 제121조의36제1항”으로 한다.

제132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호 가목, 같은 조 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가목 중 “제121조의33”을 각각 “제121조의33, 제121조의36”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3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에 입주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2조(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3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도권에 있는 종전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신 설></u>	<u>제5장의12 해양산업특화 혁신지</u> <u>구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u> <u>제121조의36(해양산업특화 혁신</u> <u>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u> <u>등의 감면) ① 「부산 해양수</u> <u>도 이전기관 지원 및 해양산업</u> <u>진흥에 관한 특별법」 제10조</u> <u>에 따라 지정된 해양산업특화</u> <u>혁신지구(이하 이 장에서 “해</u> <u>양산업특화 혁신지구”라 한다)</u> <u>에 2031년 12월 31일까지 입주</u> <u>한 기업이 해양산업 등 대통령</u> <u>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이</u> <u>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u> <u>다)을 하는 경우 감면대상사업</u> <u>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사</u> <u>업개시일 이후 그 사업에서 최</u> <u>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u> <u>(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u> <u>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u> <u>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u> <u>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u> <u>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u>

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2. 해당 과세연도의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 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③ 제1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2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④ 제2항제2호를 적용받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다

<신 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의2제8항의 이자상당가산액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 제2항제2호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121조의37(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수도권에서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내국인이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종전사업용

부동산”이라 한다)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종전사업용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을 수 있다.

1. 법인: 양도차익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금액은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에 있는 사업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신규사업용부동산”이라 한다)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거주자: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

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로 보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신규사업용 부동산 처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이 적용되는 해양산업 특화 혁신지구로의 이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신규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규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③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

	<u>또는 납부할 세액에 관하여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u> <u>1. 신규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u> <u>2. 제2항에 따라 사업용 부동산을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로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u> <u>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이전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u> <u>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의 계산 및 그 산입방법, 사업 폐지 등에 관한 판단기준,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① ~ ③ (생략)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66	④ ----- ----- ----- ----- -----

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 제1항·제2항,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104조의24 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 및 제121조의33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8조의3, 제13조의2,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8, 제26조, 제30조의4(제7조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제29조의7 또는 제29조의8을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1조의22제2항, 제1
21조의33제2항 및 제121조의36
제1항-----

⑤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85조의6제1항·제2항,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 제121조의33제2항과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⑥ ~ ⑪ (생략)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① (생략)

② 「소득세법」 제80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⑤ -----

제
121조의33제2항, 제121조의36제
1항-----

⑥ ~ ⑪ (현행과 같음)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
배제)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121조의33제

2항, 제121조의36제1항-----

③

과소신고금액(過少申告金額)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제3항, 제12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제2항, 제96조, 제96조의2, 제96조의3,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99조의12,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 제121조의33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제3항, 제12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

제121조의33
제2항, 제121조의36제1항

④

제1항·제2항, 제96조, 제96조의2, 제96조의3,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99조의12,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 <u>제121조의33제2항</u>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내국법인(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같은 법 제96조	① -----

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 추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7[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2,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8,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9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법인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4.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 · 제3항,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제4항 · 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 제64조, 제68조, 제96조, 제96조의2, 제99조의9, 제102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121조의17, 제121조의20부터 제121조의22까지, 제121조의33에 따른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6조제1항 또는 제6항,
제12조의2, 제99조의9, 제1
21조의8, 제121조의9, 제12
1조의17, 제121조의20부터

[illegible]

1. ~ 3. (현행과 같음)

4. -----

제 121조의 33,
제 121조의 36-----
-----.
-----.

가. _____

제121조의22까지, 제121조	-----제12
의33에 따라 법인세의 100	1조의33, 제121조의36----
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
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의	-----
경우	-----
나. ~ 라. (생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② 거주자의 사업소득(제16조	② -----
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해당 부	-----
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
같다)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	-----
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	-----
한 소득세(가산세와 대통령령	-----
으로 정하는 추정세액은 제외	-----
하며 사업소득에 대한 대통령	-----
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
하지 아니한 소득세를 말한다)	-----
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	-----
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 등을	-----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2호에	-----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	-----
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소	-----
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
45(산출세액이 3천만원 이하인	-----
부분은 100분의 35)를 곱하여	-----
계산한 세액(이하 “소득세 최	-----

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4.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 · 제3항,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제4항 · 제5항, 제32조제4항, 제63조, 제64조, 제96조, 제96조의2, 제99조의9, 제102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121조의17, 제121조의20부터 제121조의22까지, 제121조의33에 따른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6조제1항 또는 제6항,
제12조의2, 제99조의9, 제1
21조의8, 제121조의9, 제12
1조의17, 제121조의20부터
제121조의22까지, 제121조
의33에 따라 소득세의 100
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의
경우

1. ~ 3. (현행과 같음)

4.

제 121

조의 33, 제 121조의 36

.

.

가. -----

-----제12
1조의33, 제121조의36-----

나. · 다. (생 략)	나. · 다. (현행과 같음)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